#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(우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93

발의연월일: 2021. 2. 3.

발 의 자:우상호·김병기·한준호

홍정민 · 조승래 · 홍익표

박홍근 · 고영인 · 이규민

송영길 · 유정주 · 이용빈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라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, 진흥원 또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소속기관에는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.

이러한 입법불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·시행(2020. 8. 5.)되었음.

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

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78조제3항 및 제4항).

법률 제 호

###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제3항 중 "업무 중 일부는"을 "권한은 그 일부를"로, "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,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"을 "소속 기관 의 장에게 위임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•	제7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ㆍ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	③
회의 업무 중 일부는 대통령령	<u>권한은 그 일부를</u>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과학기</u>	<u>소속</u>
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,	<u>기관의 장에게 위임</u> .
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	
있다.	
<u>&lt;신 설&gt;</u>	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
	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
	<u>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</u>
	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
	<u>다.</u>